

# WISET 대경지역 계명대 사업단 운영 지침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 「산학협력 사업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의거 “WISET 대경지역 계명대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”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)** 사업단은 대구/경북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여성공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여대생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
2. R-CASE 프로그램의 구축, 운영, 개선, 정착, 확산
3. 여대생의 문화적/국제적 감각 고취 및 학문 영역의 다각화 유도
4. 여공학인의 진공역량 및 취/창업 역량 강화
5. 학생별 전문화, 특화, 융합화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
6. 대구/경북지역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대
7. 프로그램 성과의 활용, 홍보 및 지속적 관리

**제3조(소재지)** 사업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공과대학내에 둔다.

## 제2장 조직 및 임무

**제4조(부서 및 업무)**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연구부, 취창업지원부를 둘 수 있으며,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교육연구부
  - 가. 교내 학술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  - 나. 여학생 특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
  - 다.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
  - 라. 공대 여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방안 수립
  - 마. 여중고생의 진학 촉진 프로그램 운영
2. 취창업지원부
  - 가. 공대 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
  - 나. 산업체 현장탐방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
  - 다.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  - 라. 산업체 수요조사 및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외연 확대
  - 마. 교내 타 사업단과 프로그램 조율 및 교류

**제5조(조직)** ①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, 부단장과 사업부장을 둘 수 있다.

- ② 사업단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임무)** ①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관리 및 총괄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부장은 실무자로서 대외적 기능을 수행하며, 소관업무를 관리 및 수행한다.

**제7조(임면)** ① 단장과 부단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며 총장이 임면한다.

- ② 각 부장은 단장이 임명하며, 각 부서의 소관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.
- ③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단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.
- ④ 직원 및 연구원의 자격, 직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8조(구성)** ①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- ② 당연직 위원은 단장과 부단장이 되며, 위촉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업단 직원으로 한다.
- ④ 자체평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**제9조(임기)**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
**제10조(위원장의 직무)**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**제11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 운영목표 및 세부목표 조정
2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4. 실적보고,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촉진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## 제4장 재정 및 회계

**제13조(재정)**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.

1. 정부출연금
2. 지방자치단체 지원금
3. 산업체 지원금
4. 교비
5. 기타 수입

**제14조(회계 및 회계연도)** 사업단의 회계는 지원기관의 사업관련 규정에 따르며, 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에 따른다.

**제15조(예산편성)** 사업비 등의 예산편성은 소속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6조(회계관리)**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7조(결산보고)**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5장 보칙

**제18조(개인정보 보호)** 사업단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서 및 상담자료, 사업장 명부, 개인별 명부 등 관련 정보는 관계법령에 맞추어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사업단 시설 등의 이용)** ① 사업단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업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20조(기타)** ①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 이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.

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

1. 이 지침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